

의정부지방법원 2015. 8. 27 선고 2014가단5221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6. 25.

판결 선고 2015. 8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대 876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, □, ㄹ, 15, 14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조립식 경량판넬조 건물 25㎡ 및 같은 감정도표시 □, ㄹ, 1, 2, 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 부분 철골조 컨테이너박스 16.5㎡를 철거하고, 같은 감정도 표시 14, 15, ㄹ, 1, 2, □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토지 부분 41.5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포천시 C 대 87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, 피고가 위 토지에 인접한 D 공장용지1,523㎡의 소유자이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4, □, ㄹ, 15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조립식 경량판넬조 건물 25㎡ 및 같은 감정도표시 □, ㄹ, 1, 2, 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 부분 철골조 컨테이너박스16.5㎡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,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 41.5㎡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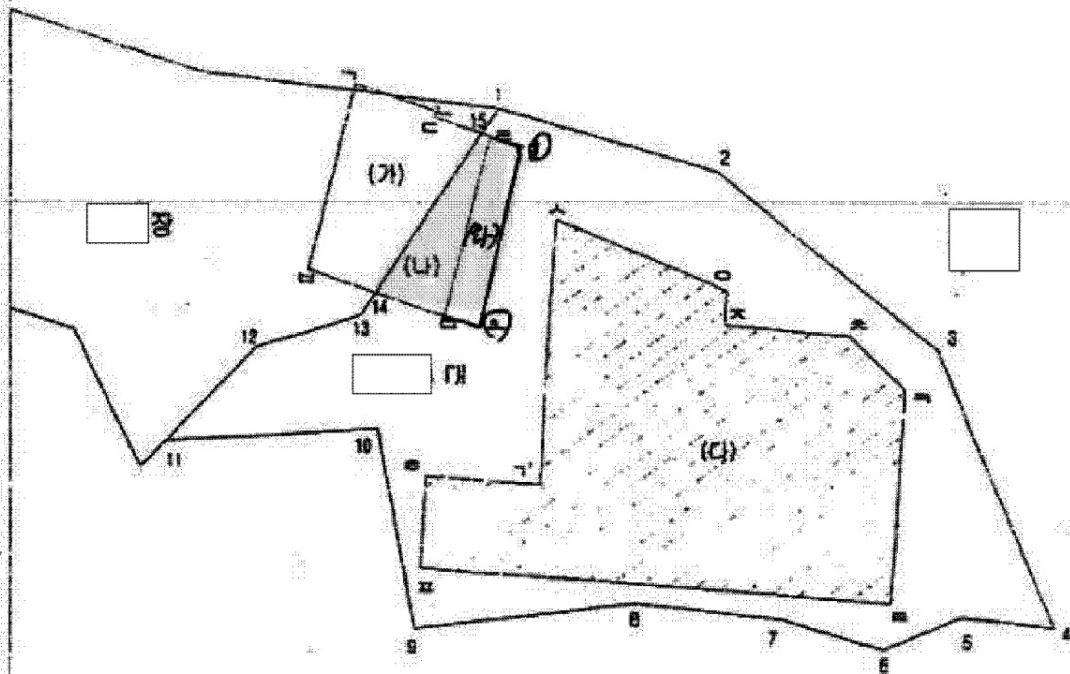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은진

감 정 도

포천시



현황 및 면적표시

범례	지번	부호	면적(㎡)	명칭	비고
		(가)	66	조립석경관완발조	
		(나)	25	조립석경관완발조	
		(다)	383	흙골조(천막)	

